

## COMMONSPIRIT HEALTH 거버넌스 정책 부칙

부칙 재정 G-003A-3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제목: 재정 지원 - 워싱턴

### 관련 정책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재정 G-003, 재정 지원 정책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재정 G-004, 진료비 청구 및 미수금 회수

이 워싱턴 부칙(부칙)은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정책의 “타 법률과의 조정” 섹션에 부합되게 병원 자선 진료 제공에 관한 워싱턴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고려하여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G-003, 재정 지원(재정 지원 정책)을 보충한다.

본 부칙은 재정 지원 정책에 규정된 대로 워싱턴주의 모든 CommonSpirit Health 직계 계열사 및 비과세 자회사에 적용된다. 본 부칙의 여하한 조항이 재정 지원 정책의 여하한 조항과 상충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부칙이 우선한다.

재정 지원 정책에서 응급 의료 및 필수 의료행위(EMCare)에 대한 언급은 WAC 246-453-010(7) 및 (11) 각각에 포함된 "적절한 병원 시설 기반 의료 서비스" 및 "응급 진료 또는 응급 서비스"의 정의와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용어 정의

- A. "가구 소득"은 WAC 246-453-010(17)에 따라 임금 및 급여, 복지 수당, 사회 보장 수당, 파업 수당, 실업 수당 또는 장애 수당, 자녀 양육비, 위자료,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업 및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순 소득에서 파생된 총 현금 수입(세전)을 말한다.

### 재정 지원 적격성

- A. 환자가 재정 지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계정 잔액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 B. 재정 지원 정책에 정의된 "환자 협조 기준"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만 적용된다.
- 병원 시설이 WAC 246-453-020(1)에 따라 병원 시설에 확인될 수 있는 여하한 제삼자 보장으로부터 환급을 구하도록 허용
  - 병원 시설이 WAC 246-453-020(4)에 따라 각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제삼자 후원의 실재 여하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허용

- WAC 246-453-020(5)에 따라 책임 당사자의 신청 절차 준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결함 또는 언어 장벽을 고려하여, 책임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자선 진료 후원에 대한 신청 절차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정 지원 신청 방법

- A.** 병원 시설은 1 차 후원 자격 결정을 위해 책임 당사자가 구두로 제공한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 병원 시설은 WAC 246-453-030(1)에 따라 1 차 후원 자격 결정을 위해 병원 시설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진술서에 책임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WAC 246-453-020(1)에 따라 후원 자격의 초기 결정이 책임 당사자가 빈곤층 분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분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수를 배제한다. 단, 책임 당사자는 병원 시설이 후원 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협력한다.
- B.** WAC 246-453-030(2)에 따라 재정 지원 정책에 명시된 문서 외에, 소득 정보가 적절한 연율로 환산되는 경우 다음 문서 중 하나는 자선 진료 후원 자격의 최종 결정이 기반으로 하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어야 한다.
- Medicaid 또는 주정부 자금 제공 의료 지원에 대한 적격성 승인 또는 거부 양식
  - 실업 수당 승인 또는 거부 양식
  - 고용주 또는 복지 기관의 서면 진술
- C.**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또는 지적 능력 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환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가해질 징후가 있는 경우, 병원 시설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 내내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통역사를 참여시키는 등 신청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D.** 병원 시설은 시기적절하게 재정 지원 적격성에 대한 1 차 및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시설은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책임 당사자의 소득이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연방 빈곤 지표의 200% 이하임을 명시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여기에 규정된 문서를 받은 즉시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정 지원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악성 채무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병원 시설이 수익에서 자선 진료 공제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WAC 246-453-020(10).
- E.** 최초에 재정 지원 수혜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된 여하한 책임 당사자에게는 최소 14 일 또는 당해인의 건강 상태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최종 후원 자격 결정을 받기 전에 WAC 246-453-030 에 규정된 문서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F.** WAC 246-453-030(4)에 따라 책임 당사자가 위에 규정된 여하한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시설은 빈곤층 분류를 위한 최종 적격성 결정을 위해 책임 당사자의 서면 및 서명이 된 진술을 신뢰해야 한다.

- G. WAC 245-453-030(5)에 따라 소득 및 가구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시설에서 책임 당사자에게 보내는 정보 요청은 자선 후원에 대한 책임 당사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며 이러한 후원 신청을 저해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적격성과 관련된 사실만 검증할 수 있으며 중복 검증 양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H. 병원 시설은 재정 지원 신청인에게 WAC 246-453-020(7)에 따라 정보를 수령한 후 14 일 이내에 최종 후원 자격 결정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한 고지에는 책임 당사자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금액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병원 시설이 책임 당사자의 재정 지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시설은 책임 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 당시 거부 기준의 근거와 거부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금액을 초과하는 여하한 지불은 자선 진료 지정 수립 후 30 일 이내에 환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WAC 246-453-020(11).
- J. 책임 당사자가 해당 EMCare 와 관련된 청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고 이후 서비스 제공 시점에 재정 지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금액을 초과하는 여하한 지불은 자선 진료 지정 수립 후 30 일 이내에 환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WAC 246-453-020(11).
- K. WAC 246-453-020(6)에 따라 병원 시설은 후원 자격의 초기 결정을 통해 명시된 바와 같이 소득이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연방 빈곤 지표의 200% 이하인 책임 당사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적격성 추정

책임 당사자가 빈곤층으로 식별되는 것이 병원 시설 직원에게 명백하고 병원 시설 직원이 재정 지원 정책 또는 기타 사항에 포함된 개인의 생활 상황을 기반으로 WAC 246-453-040 에 규정된 광범위한 기준 내에서 소득 수준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추가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 시설은 정확한 소득 수준을 설정하거나 책임 당사자에게 문서를 요청할 의무가 없다.

## 이의 신청

- A. 재정 지원이 거부된 모든 책임 당사자는 문서의 여하한 흠결을 수정하거나 거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 시설 최고 재무 책임자가 결정을 심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절차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
- B. 책임 당사자는 30 일 이내에 재정 지원의 최종 적격성 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중 첫 14 일 이내에 병원 시설은 문제가 되는 계정을 외부 미수금 처리 대행 기관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병원 시설이 미수금 회수 활동에 착수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의신청이 종결될 때까지 미수금 회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14 일 경과 후에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병원은 미수금 회수 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 C. 이의제기의 최종 결정이 이전의 재정 지원 거부를 확정하는 경우, 병원 시설은 주정부 법률에 따라 책임 당사자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서면 고지를 발송해야 한다.

CommonSpirit 거버넌스 정책 재정 G-003, *재정 지원*에 명시된 다른 모든 조건은 변경되지 아니한다.